

정부의 돼지고기 수출 시책



이 수 헌
(농림수산부 축산국)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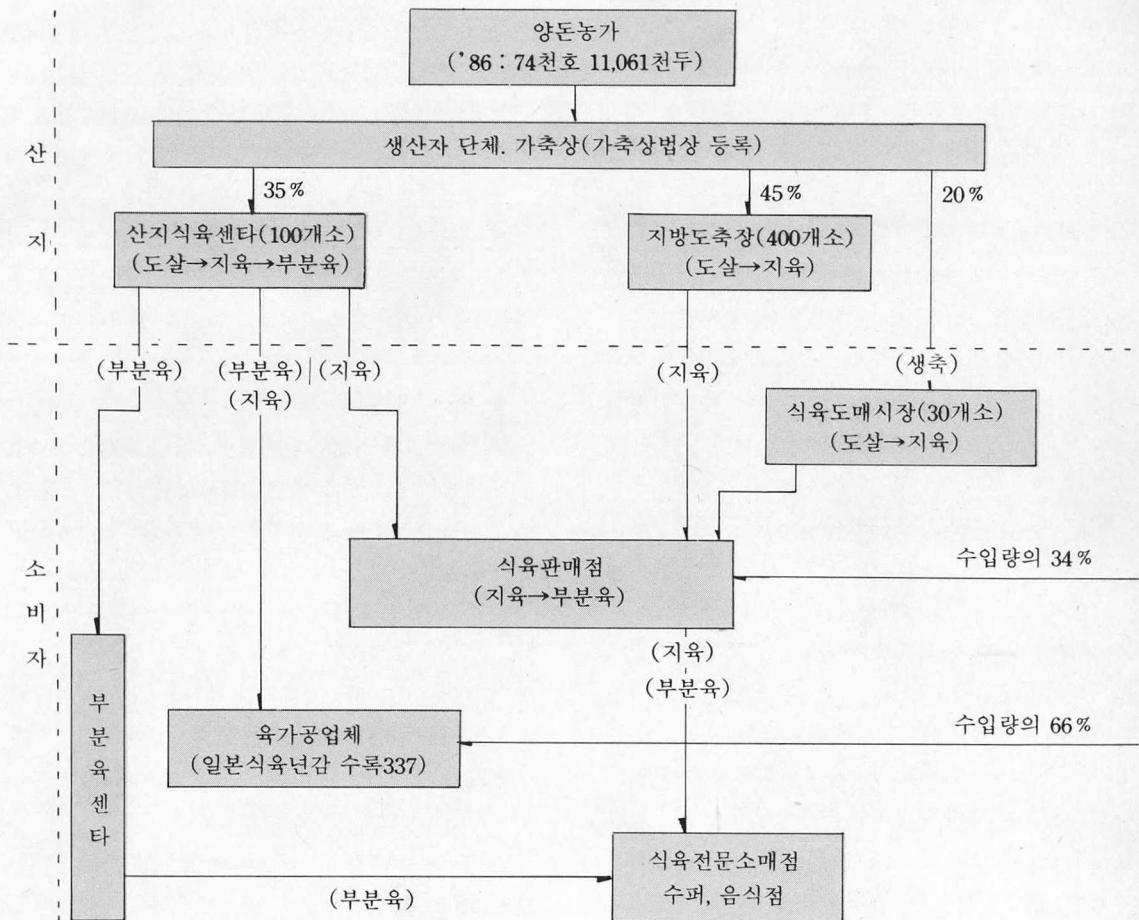
지난해 돼지고기 수출량은 검역실적 기준으로 7,936 톤이다. 돼지고기 수출이 한창이던 '75년의 수출실적 8,431톤에 육박해 있으며, 금년의 수출계획 1만톤이 달성된다면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수치만큼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이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내에서의 수출용 돼지수급 및 가공기반의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국인 일본정부가 설파메타진 등 유해물질의 잔류량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등 수출 여건은 불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변해가는 돼지고기 수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돼지고기 수출관련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조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민간의 관련업체가 상호 협조체제를 앞당겨 조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한 정부 시책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돼지고기 수출 여건

가. 일본의 돼지고기 유통 측면

일본에서의 돼지고기 유통형태는 대부분이 부분육이다 (그림 참조). 따라서 부위별 수요에 따라 과부족이



〈그림〉 일본의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 개요

생기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등심, 안심, 어깨등심 등 부족 부위를 수입해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지육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규격과 물량 면에서 수출 돼지고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나.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제도 측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차액관세제도로서 해마다 조정하는 관세분기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웃도는 가격으로 수입할

때에는 수입가격에 대한 5%의 관세를, 그것을 밑도는 가격으로 수입할 때에는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가 수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국내의 돼지고기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세분기점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형태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냉장 신선육으로 전환하면서 수출부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출물량 면에서나 가공시설 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잔여율에 대한 처리 부담도 커 수출을 확대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

다. 돼지고기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측면

일본에서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강화는 일본국내의 양돈 불황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 억제 필요와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易地思之的 견지에서 이해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수입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에는 보탬이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의 돼지 수급시책 측면

정부에서는 양돈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연평균 돼지가격이 투입자본의 이자까지 포함한 생산비의 11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돼지수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그 결과 '87년 이후의 돼지가격은 90kg짜리 규격돈 기준으로 11만원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또한 수급안정과 대규모 양돈업체의 사육규제를 통해 양돈을 농가의 소득원으로 유지 보호하고 자가노동력 위주의 전업 양돈농가를 육성함으로써 돼지수급 안정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감안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업체는 제한된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거냥하여 양돈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돼지고기 수출시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돼지고기 수출 여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돼지고기 수출의무량 부과

수출의무량 부과는 축산법 제13조의 2에 근거하는 것으로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양돈규모에 상응하는 역할을 분담하

여 우리나라의 양돈업을 균형되게 발전시켜 나가는 취지와 연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자금력과 전문 기술인력의 활용으로 수출돼지 생산여건이 갖춰진 대규모 양돈업체에서는 수출쪽으로 전력케 하여 총체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토록 함과 아울러, 국내의 수요증가분에 대하여는 중·소규모 양돈농가에서 돼지를 늘려 키우도록 함으로써 양돈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전업양돈농가의 육성에 기여도록 하고자 함이다.

● '85~'87년

양돈업허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모돈 1,000두 초과업체에 대해 초과모돈 두당 연간 200kg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거나 자돈 13두를 농가와 계열화 하여 사육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두수 범위 내에서 초과사육을 허용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분에 상응하는 모돈을 감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한 조치일로부터 2년만인 '87년 6월까지 부과된 의무는 이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 돼지고기 수출이 '85년의 172톤에서 '86년에 808톤, '87년에는 3,142톤으로 확대되었다.

● '88~'89년

이와 같이 돼지고기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모돈(종돈 포함) 500두 이상의 양돈업체의 전체 모돈과 종돈에 대해 두당 연간 모돈은 200kg, 종돈은 100kg의 돼지고기 수출의무량을 부과하면서 '88년에는 의무량의 50%를, '89년에는 의무량 전체를 수출토록 하되 모돈(종돈 포함) 1,000두 이상 업체의 초과두수에 대하여는 '88년에도 의무량 전량을 수출하도록 하였다. '85~'87년에 인정한바 있는 계열화 사육두수에도 수출의무량을 부과한 이와 같은 조치는 '88년의 돼지고기 수출이 7,936 톤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하였으며, 금년의 돼지고기 수출목표 1만톤 달성을 큰 밑바침이 될 것이다.

나. 수출돼지 육가공시설 확충 지원

'88년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43만 3천톤으로 '81

년의 21만톤에 비해 배 이상이 늘어났으나, 육가공 시설은 대부분이 포장육 가공단계의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출 부위가 규격돈 두당 2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출육 가공처리능력은 규모와 시설 및 위생 면에서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가공공장은 행정적으로 보건사회부 소관이나 수출육가공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88년 이후 육가공공장 신·증설 자금으로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 수출잔여육 비축자금 지원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대체로 등심, 안심, 어깨등심으로 비육돈 두당 생산정육의 25% 수준인 12kg 정도이며, 여기에 볼기살 일부가 포함될 경우 20kg 수준이 된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수출잔여육 비축에 따른 자금 압박을 완화해 주기 위해 '88년의 30억원 지원에 이어 '89년에도 같은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 자금은 단순히 수출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돼지가격 하락에는 일정기간동안 의무 비축토록 하는, 다시 말해 국내의 돼지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 유해잔류물질 검사 대응책

항생제, 항균제, 중금속, 호르몬제 등이 수출돼지고기 예 규정치 이상으로 잔류되어 있는지의 검사는 국립동물검역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수출용 원료돼지의 사육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물질의 잔류기회를 통제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므로, 비육후기에는 비육후기 이외의 다른 사료는 일체 급여하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물질을 주사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휴약 기간을 두어 출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 대상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비육후기용 사료만을 급여 했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비육전기사료 등 그와 같은 물질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해 오던 돈방에서 계속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 돼지의 고기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양관리 등의 과정에서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 돼지고기 수출협의체 운영

양돈업체, 수출업체 등 돼지고기 수출관련업체가 당면 사항을 협의하여 돼지고기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에서 돼지고기 수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4. 맷는말

돼지생산비는 돼지개량 및 양돈경영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절감될 것이며 생산비를 감안한 돼지가격 지지수준도 그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이는 해외 축산물과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의 돼지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며, 생산조절제도가 정착 발전됨에 따라 지난 날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돼지가격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은 생산과잉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소규모 양돈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양돈장에 대한 사육 억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규모 양돈장은 소규모 양돈농가와의 생산경합을 줄일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돼지고기는 수출입제도상으로 수출자동승인품목이다. 다시 말해 수출에는 제한이 없는 품목이며,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의 수익을 얻기 위해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것이다.

일본시장을 겨냥하는 돼지고기 수출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자리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은 관련업체가 하기에 따라 능히 경쟁력을 갖추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의 기반 조성적인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시책을 받침돌로 하여 관련업체가 얼마나 상호 협조하며 진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의 앞날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